

■ 관세사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2.2.2>

관세사 시험과목(제5조제1항 관련)

<제1차 시험과목>

1. 내국소비세법(「부가가치세법」·「개별소비세법」·「주세법」에 한한다)
2. 관세법개론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을 포함한다)
3. 회계학(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한다)
4. 무역영어

<제2차 시험과목>

1. 「관세법」(관세평가는 제외하며,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을 포함한다)
2. 관세율표 및 상품학
3. 관세평가
4. 무역실무(「대외무역법」 및 「외국환거래법」을 포함한다)